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설립 근거 삭제 및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 근거 마련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21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특수법인 설립 삭제 및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의 설립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14
1. 화학물질관리협회 인력·재산 현황	14
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기존 기능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	16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4일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화학물질의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나.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홍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및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로 함(안 제53조제4항).

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설립 근거 삭제 및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근거 마련

개정안은 현행법상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53조(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하 “화학물질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화학물질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화학물질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	④ 화학물질관리원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현행	개정안
<u>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u> ⑤ <u>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u> 2. <u>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u> 3. <u>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u> ⑥ <u>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1. <u>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u> 2. <u>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홍보</u> 3. <u>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u> 4. <u>「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u> 5. <u>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u> 6. <u>그 밖에 화학물질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u> ⑤ <u>화학물질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⑥ <u>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u>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u>협회</u>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u>협회의</u>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 ----- ----- ----- ----- -----<u>화학</u> <u>물질관리원</u>-----.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 ----- -----<u>화학물질</u> <u>관리원</u>----- ----- -----.

현행법 제53조¹⁾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²⁾의 설립 근거

1) 법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가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를 두고 있음3).

현재 협회에서는 이 법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에 근거하여 국가사업의 위탁·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화평법 이행 중소

설립되는 법인(법령안입안심사기준, 법제처)

3) (참고자료 1) 화학물질관리협회 인력·재산 현황

4) 법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의2. 제19조제3항(허가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 10. 삭제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업무의 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가.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등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성분 확인 등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음.

2023년 기준 협회의 총 실적은 548억 1,200만원인데, 이 중 정부위탁 및 민간대행 사업의 수행을 위해 환경부와 계약한 금액이 534억 4,300만원으로 협회 전체 실적의 약 97.5%가 정부사업에 해당함.

[화학물질관리협회 대행(위탁) 사업 현황(2021~2023)]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1년	'22년	'23년
	화학물질관리협회 총 실적	76,783	56,320	54,812
	사업(계약)금액('21~'23년) 기준	68,674	48,492	53,443
민 간 대 행	합계	63,565	42,269	49,075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48,960	33,960	37,750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	5,440	5,170	8,170
	녹색화학 인식확산 등을 통한 기반 마련	510	534	550
	화학물질 확인 등 위탁사업	708	758	758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사업	553	553	553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	1,294	1,294	1,294
	노후산단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6,100	-	-
	합계	3,905	3,910	1,550
	화평법 제도운영 지원사업	455	460	500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3,450	3,450	1,050
	합계	1,204	2,313	2,818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원사업	600	-	628
	통계조사보고 기술지원 및 신뢰성 강화방안	105	-	-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검증 및 정보공개자료 구축(안전원)	-	176	-
위 탁	제한·금지물질 관리 확대	63	-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및 관리 확대	-	-	121
	허가후보물질 선정·공개체계 구축 및 위해성검토	199	-	-
	허가후보물질 위해성 검토 및 상세유통조사	-	85	-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관리 확대	-	-	99
	중점관리물질 지정·관리 강화방안 마련	6	-	-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62	-	-
	스톡홀름협약 등재후보물질 규제대응 및 국제협약동향 파악	35	-	-
	벤젠과 크실렌의 상세 유통현황 조사 분석	-	35	-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검증 시범사업	49	-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용 시범사업	85	-	-
	합계	1,204	2,313	2,818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원사업	600	-	628
	통계조사보고 기술지원 및 신뢰성 강화방안	105	-	-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검증 및 정보공개자료 구축(안전원)	-	176	-
	제한·금지물질 관리 확대	63	-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및 관리 확대	-	-	121
	허가후보물질 선정·공개체계 구축 및 위해성검토	199	-	-
	허가후보물질 위해성 검토 및 상세유통조사	-	85	-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관리 확대	-	-	99
	중점관리물질 지정·관리 강화방안 마련	6	-	-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62	-	-
	스톡홀름협약 등재후보물질 규제대응 및 국제협약동향 파악	35	-	-
	벤젠과 크실렌의 상세 유통현황 조사 분석	-	35	-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검증 시범사업	49	-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용 시범사업	85	-	-

구분	사업명	'21년	'22년	'23년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활용연구 및 운영지원	-	89	-
	화학물질 수입·허가제도의 산업계 이행지원 교육·홍보 프로그램 마련	-	28	-
	살생물제의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이행체계 마련	-	1,900	1,970

※자료: 화학물질관리협회

그런데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국가 위탁사업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구성⁷⁾된 사단법인 성격의 협회가 공공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한 공정성·책임성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53조⁸⁾에서 환경부장관의 협회 정관에 대한 인가 및 협회의 운영에 대한 시정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만으로는 실제 협회 업무수행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협회가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와 재산의 일부를 한국화학물질관

7) 2023년 기준 회원사는 제조업(249), 판매업(508), 취급업(122), 수·출입업(414) 등 총 1,293개사에 달함(화학물질관리협회)

8) **법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리원이 승계하며, 협회의 직원을 관리원의 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개정안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를 통해 기존에 민간 협회가 수행하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국가의 대행·위탁사무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화학물질 관리업무 수행의 공공성·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화학물질관리협회의 화학물질관리원 전환]

구분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관리원(안)
설립주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u>영업을 하는 자</u>	<u>환경부장관</u>
설립목적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을 건전한 발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수행
법인격	「민법」 중 <u>사단법인</u> 에 관한 규정	「민법」 중 <u>재단법인</u> 에 관한 규정
제재·감독	-정관 작성·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인가 -협회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 취소 -협회의 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시정요구	환경부장관의 지도·감독
「형법」상 공무원의제	법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임직원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종전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

부 칙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협회는 총회의 의결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종전협회는 「민법」 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정관인가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종전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재단법인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관한 종전협회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 및 종전협회의 재산의 일부는 종전협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등기일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⑦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종전협회가 한 행위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 한 행위로, 종전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협회”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동일한 취지·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⁹⁾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2022.5.16.)되었으

9) 의안번호 211126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2023.2.16.)에서 신규 기관 설립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여¹⁰⁾ 2소위에 회부되었고, 이후 임기만료폐기(2024.5.29.)되었음.

그러나 제21대국회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23.2)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정부사업 인건비 편취 의혹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¹¹⁾되었고, 환경부 감사관실이 해당 사항을 이첩받아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협회에서 약 39억원 가량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것을 확인('23.12)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환수가 가능한 약 29억원을 신속히 환수조치('24.1)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¹²⁾에 따라 1년간('2

10)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안)의 업무 중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의 기능과 관리원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11) (1차 신고) 국가 사무 위탁용역비 중 인건비 부정 환급 의혹('23.3)

(2차 신고)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위탁용역비 부정 편취 의혹('23.6)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4.5~'25.5) 국가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협회의 기능·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¹³⁾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였고,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도 환경부는 국가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협회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공기관¹⁴⁾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으로, 이는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공공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화학물질관리원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한국환경공단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존 기관의 기능 확대·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참고자료 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기존 기능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 5. (생략)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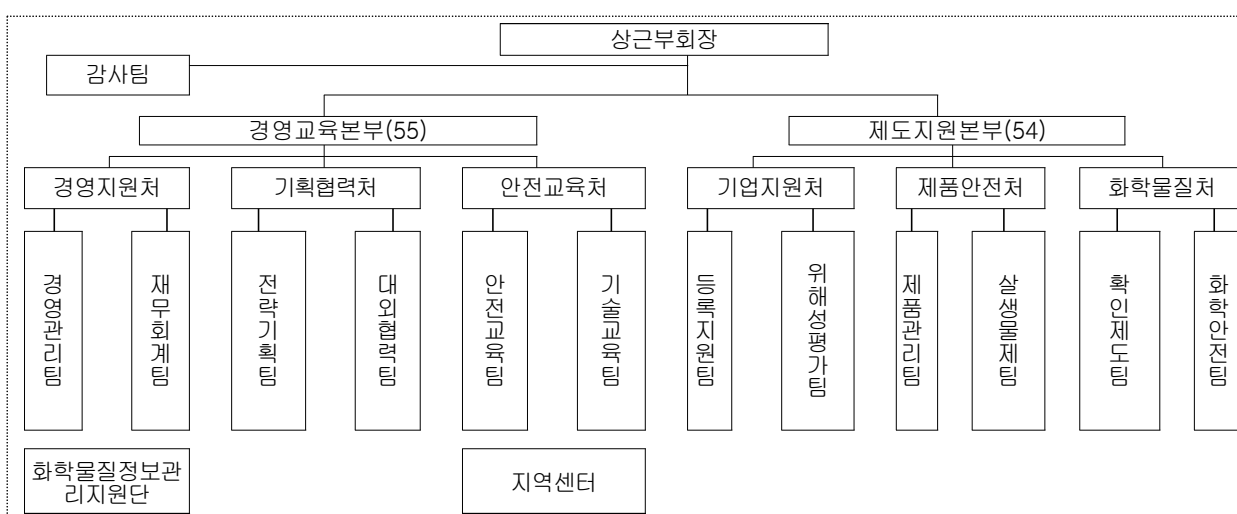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화학물질관리협회 인력·재산 현황(자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인력 및 조직 등 현황('24.1. 기준)

- (임원진, 31명) 회장, 부회장(8, 상근 1명 포함), 이사(20), 감사(2)
- (인력, 110명) 상근부회장, 이사(3), 부장 이하(80), 계약직(26)
- (회원사, 1,293개사) 제조업(249), 판매업(508), 취급업(122), 수출입업(414)
- (조직) 2본부 6처 13팀



□ 협회 결산 및 재산 현황

- '23년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항목		수입			지출			이익	
		‘22년 실적	‘23년 실적	증감	‘22년 실적	‘23년 실적	증감	‘22년	‘23년
합 계		56,320	54,812	△ 1,508	54,224	53,471	△ 753	2,096	1,341
위탁대행		46,065	41,357	△ 4,708	45,795	41,278	△ 4,517	270	79
연구용역		2,150	4,264	2,114	2,420	4,557	2,137	△ 270	△ 293
교육	안전	7,136	7,905	769	2,472	3,334	862	4,664	4,571
사업	자체	115	181	66	40	77	37	75	104
기타 등*		854	1,105	251	3,497	4,225	728	△ 2,643	△ 3,120

- * 1) 수입 : 회비, 광고, 임대, 공동등록, 기술지도, 세미나 등
2) 지출 : 인건비, 관리비 등

○ 주요 재산 현황('23.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과목	재 산 현 황(백만원)			
자산	30,378	유동	현금, 보통예금 등	18,854
		비유동	토지, 건물 등	11,524
부채	15,243	유동	미지급금, 선수금 등	15,153
		비유동	퇴직급여충당금 등	90
자본	15,135	자본금		286
		이익잉여금		14,849

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기존 기능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87호, 2024. 4. 2., 일부개정]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 24. (생략)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 24. (현행과 같음)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9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 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다. 1. ~ 4. (생 략) 5.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 로 한정한다)의 공개 <u><신 설></u>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 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다.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 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5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 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 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u>기술적</u> 지원 7. ~ 10.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 임한다. 1. (생 략)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의 접수 및 통지 3.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 의 통지 4. ~ 13. (생 략) 14.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 로 한정한다)의 공개 <u><신 설></u>	6.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 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u>행정적·기술적</u> ·재정적 지원 7. ~ 10.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 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4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조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 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 18. (생 략)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6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 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 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15. ~ 1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 다.

위탁한다. <신 설>	1.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신 설>	2.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2조의2제1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
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신 설>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제공 및 비용의 징수
<신 설>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신 설>	6.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신 설>	7.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신 설>	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신 설>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
<신 설>	10.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신 설>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신 설>	1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조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신 설>	13. 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신 설>	14.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신 설>	15.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의 접수
<신 설>	16.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 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 탁한다.
1.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 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의2.2. (생 략)	1의2.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삭 제>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